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실행에 나타난 법률 정보활용교육 실태 분석*

An Analysi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Based on the Operation of Korean Law Schools' Education Curriculum

김 성 은(Sung-Eun Kim)**

정 종 기(Jong-Kee Jung)***

목 차

- | | |
|----------------------------|------------------------------|
| 1. 서 론 | 5.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방안 |
| 2.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과정 | 6. 결론 및 제언 |
| 3. 주요 국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제도 | |
| 4.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보활용교육 실태 | |

초 록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in subjects of law school curriculum are composed of subjects based on related laws for law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subject in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on law information services which would be useful to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22 law schools have legal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s an essential or fundamental part of their curricula. Also, 2) in 14 law schools(63.6%) law librarians take part in the instruction of law information research subject, while in three law schools(13.6%) librarians do not participate, and in another three law schools(13.6%) outside experts teach them. Finally, 3) the graduate degrees or final majors of librarians participating in instruction a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33.3%), Administration(25%), and Law(25%). These results reflect the need for efforts to change instruction systems to team teaching with professors and law librarians, to give law libraries plenty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to enforce the related associations' roles with law libraries.

키워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정보활용교육

Law School, Law Library, Legal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도서관 정보기획실(sekim@chungbuk.ac.kr) (제1저자)

***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s2hfs@k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1년 10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1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03-122,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10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대학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출판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분교를 포함하여 85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인구비례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수요 예컨대, 국제통상분쟁, 환경분쟁, 의료분쟁, 특허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신경철 2008) 미국식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추진되어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¹⁾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명시하여 학부전공과는 무관하게 입학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존의 제도와 달리,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법학이론 교육과 법 실무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조인의 양성과정 내지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²⁾와 동시행령 제13조³⁾에서와 같이 법률로써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중의 “법률정보의 조사”는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

1)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0조(교육과정)

-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3조(교육과정)

-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 1. 법조윤리(法曹倫理)
 - 2. 국내의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 4. 모의재판
 - 5. 실습과정
-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을 가르치는 과목으로(김창록 2007) 법학분야의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법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가는 법학연구에 필요한 기본 도구에 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Hotchkiss 1992). 이와 같이 정규교육과정 교육을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이유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보인”⁴⁾이면서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강화시켜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소속 법학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학도서관의 교육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를 위해 조사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5개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4가지 영역은 첫째,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둘째,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에 대한 주제전문성 현황, 셋째, 정보활용교육의 수업형태, 넷째, 정보활용교육의 수업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조사방법은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강의계획서 공개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2개 대학원을 제외한 23개 대학원을 중심으로 관련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보하였으며 전화인터뷰를 통한 심층조사를 병행하였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조사에 해당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2010.2.16일부터 2011.2.15일까지 1년에 걸쳐 인편, 우편, 팩스, 그리고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원하였고 해당 강좌가 대학원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에 개설된 관계로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건국대와 영남대는 강의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두 대학원을 제외한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수집된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보활용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대부분이 법학방법론에 기초한 접근방식과 축약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의계획서 자체만으로는 정보활용교육의 조사영역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법률정보조사 또는 이용자교육에 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도서관 사서에게 심층 전화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인터뷰 실시기간은 2011.2.16일부터 22일까지 이화여대를 제외한 24개 법학도서관 사서들이 인터뷰

4) 1980년대 미국도서관협회의 정보활용능력 위원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는 최종보고서에서 정보활용능력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정보인’에 대하여 정의하였다(ALA 1989).

에 응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건국대, 영남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석대상이 된 대학원은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강의담당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강좌명, 개설 학기, 학점, 강의시수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과정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으로 시작된 로스쿨제도에 대한 논의는 2007년 7월 3일, 약 12년간의 긴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같은 해 9월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⁵⁾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10월 30일에는

2006년 6월에 완성된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 요령』을 확정 발표하고 설치인가 신청을 공고하였다(김창록 2007).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함(김원주 2005)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이 2008년 2월 4일 발표되었고, 같은 해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 권역에 강원대를 포함한 15개 대학(강원, 건국, 경희, 고려, 서강, 서울, 서울시립, 성균관, 아주, 연세, 이화, 인하, 중앙, 한국외국어, 한양)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대전권역: 충남, 충북, 광주권역: 전남, 전북, 원광, 제주, 대구권역: 경북, 영남, 부산권역: 동아, 부산) 등 총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개원과 함께 신입생이 입학함으로써 2011년 현재 3기를 맞이하였다.

5)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주요 국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제도

3.1 미국

미국 로스쿨(Law School)제도의 설립 및 존립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은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승인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로스쿨의 졸업생들은 대부분의 주(州)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변호사협회의 승인은 법과대학의 존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는 승인과 관련하여 기구 및 행정조직, 교육과정, 교수진, 도서관 및 기타 정보원 등의 분야에서 자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미국변호사협회 기준에 따라 각 로스쿨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

미국 로스쿨제도는 3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중 1학년 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2, 3학년 과정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학생들은 로스쿨 졸업 후 추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에 따라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또한 1학년 과목과는 달리 2, 3학년 과목은 세미나, 상담과목(clinic), 실습과목 등 실무 중심의 과목이 많이 개설된다(육소영 2004).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의 로스쿨 1학년은 헌법(Constitutional Law), 형법(Criminal Law),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형사소송법(Crim-

inal Procedure), 불법행위법(Torts), 계약법(Contracts), 재산법(Property), 그리고 법률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Legal Writing Research)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법률조사 과목은 세계적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와 'LexisNexis'를 이용해 법률 및 판례를 조사하는 방법을 배운다(김유호 2009). 법률문서 작성과목에서는 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미국 로스쿨 석사과정의 교과목에서 1학년 필수과목으로 '법률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 교과목(Legal Writing Research)이 법률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비교하면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와 존립의 중심에 미국변호사협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음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일본

일본도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문제 해결 및 국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도 사법시험이라는 점수에 의한 선발이 아닌,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프로세스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그 핵심을 이루는 시스템으로서 고도의 전문교

육기관인 68개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이 설치되었고 그 후 6개 대학원이 인가되어 현재 74개 법과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신경철 2008) 일본의 법과대학원 도입 배경이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법학이수자의 2년 과정과 법학 미 이수자의 3년 과정이 있다. 3년 과정인 경우 93학점 이상의 학점취득이 수료요건이고, 2년 과정인 경우에는 63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이 수료요건이 된다(가토마사노부 2004). 일본의 법과대학원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이 교육내용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목은 법률기본과목(공법계: 헌법, 행정법, 민사계: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계: 형법, 형사소송법 등),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 법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임상법학 등), 기초법학과 인접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 등), 그리고 전개과목 및 첨단과목(노동법, 독점금지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 중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기초과목의 일부가 필수이다(신경철 2008).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도 선택교과목과 필수교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률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활용교육 교과목으로는 법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교과목이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즉, 법학도서관과 연관된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과대학원의 인가와 설립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있다.

3.3 한국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기본과목은 교실에서 강의 및 토론을 통하여 해당 과목의 기본적 체계와 이론을 연구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전통적인 법률과목을 말하고 있다. 실무과목은 습득된 법이론을 실제의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식에 관한 과목으로서 전임교원 내지 현직 실무가가 수강생에게 실제 사안 내지 실제사안과 유사하게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법조인으로서 해결하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평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민사실무, 형사실무, 공법실무 등의 과목을 말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0).

또한, 실무필수과목으로서 ① 법조윤리(法曹倫理), ②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③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④ 모의재판, ⑤ 실습과정의 다섯 개 교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 '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서도 언급되었듯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법률로써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도서관은 법률전문도서관 정보화시설 등 법률 전문교육을 위한 물적, 인적자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무필수과목으로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법학도서관의 역할 가운데 법률 정보활용교육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로스쿨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기본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하였다.

4.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보활용교육 실태

4.1 교과목 개설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된 전국의 22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정보활용교육 강좌명은 다음 <표 1>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표기된 “법률정보의 조사”와 거의 비슷한 교과목 명칭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의 조사

<표 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정보조사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	과목명	이수정보				구분
		학년	학기	학점	시수	
강원대	법률정보조사	1	1	1	2	전공필수
경북대	법률정보조사	1	1	1	2	전공필수
경희대	법률정보조사	1	1	1	1	전공필수
고려대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전공실무필수
동아대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2	전공실무필수
부산대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필수
서강대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기초
서울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1	1	1	1	기본
서울시립대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실무필수
성균관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2	1	2	2	실무기초
이주대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전공필수
연세대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1	1	1	2	실무필수
원광대	법률정보조사	1	1	1	2	실무필수
인하대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필수
전남대	법률정보조사	1	2	1	2	필수
전북대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필수
제주대	법정보조사론	1	1	1	2	실무기초
중앙대	법정보조사	1	1	1	2	실무기초
충남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1	1	2	3	실무필수
충북대	법률정보의 조사	1	1	2	2	전공필수
한국의국어대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필수
한양대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문서의 작성	1	1	2	2	실무필수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명은 '법률정보조사', '법률정보조사론', '법률정보의 조사',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의 작성' 등과 같은 교과목 명으로 개설되어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년 1학기에 15주 또는 16주 강의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충남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 작성"이라는 교과목 명으로 개설되어 있다.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이 통합된 강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외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이 각각의 독립 교과목으로 같은 학기 또는 학기를 달리하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한 학기 15주 강의 중 5주간은 '법정보조사'로 10주간은 '법문서작성'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교과목으로 강의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에는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었다가 2010학년도부터는 법문서작성과 통합되어 2학년 1학기로 편성되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0학년도부터 1학년 2학기로 옮겨지면서 시수만 한 시간 더 증설되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에 1학년 1, 2학기에 개설되었다가 2010학년도부터 1학년 1학기로 조정과 동시에 시수가 한 시간 더 증설되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에는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0학년도 이후는 3학년 1학기로 편성되었다.

'법률정보조사'의 이수학점 및 시수는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의국어대)에서 1학점 1시간으로 편성을 하였지만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점 주당 2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성균관대, 충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학점 2시간으로 편성되었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학점 주당 3시간으로 편성되어 각 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필수 또는 실무필수, 실무기초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원되어 3기 입학생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이 초기단계에 있는 관계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사서들도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담당사서 주제전문성

〈표 2〉에서는 법률정보조사 또는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므로 대학명은 밝히지 않고 무작위순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 사서들의 자격증을 살펴보면, 1급 정사서가 13명(59.1%), 2급 정사서가 9명(40.9%)이었고, 경력에 있어서는 20년 이상 10명(45.5%), 10년 이상 7명(31.8%), 10년 미만 5명(22.7%)으로 대부분 20년 이상 경력의 1급 정사서들이 정보활용교육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학부전공에 대한 담당사서의 주제전문성은

〈표 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 주제전문성 현황

대학	사서자격증	학부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경력(년)
A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철학	25
B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10
C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		15
D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평생교육		27
E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24
F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25
G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정보통신 공학		17
H	2급 정사서	법학	법학, 문헌정보학	석·박사통합 문헌정보학	8
I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20
J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			22
K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6
L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로펌근무	법학		10
M	1급 정사서	독일문학	문헌정보학		26
N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7
O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법학	9
P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5
Q	1급 정사서	행정학	행정학		21
R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16
S	1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18
T	1급 정사서	행정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27
U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20
V	2급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		10

문헌정보학이 75%(18명), 법학이 12.5%(3명), 행정학이 8.3%(2명), 독일문학이 4.2%(1명)의 전공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법학을 주제배경으로 가진 사서들 중에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다시 법학을 전공한 사서가 2명이 있었고 이 중에 1명은 로펌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거나 석사학위 취득자는 77.3%(17명)로 이들 중 2명의 사서는 문헌정보학 외에도 또 다른 주제 분야를 더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석사과정 전공에 대한 주제배경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이 42.1%(8명)이며 이들 중에 5명은 학부와 같이 문헌정

보학을 전공으로 하였고 3명은 학부 전공이 행정학, 법학, 독일문학으로 상이하였다. 행정학은 26.3%(5명)로 이들 중에 4명이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고 1명이 학부와 같이 문헌정보학 전공이 아닌 행정학 전공의 사서였다. 법학은 21.1%(4명)로 이들 중 3명은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고 이 중 1명은 학부에서 문헌정보학과 법학을 전공하였다. 또 다른 1명은 학부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였고 다시 문헌정보학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보통신학, 평생교육학은 각각 5.3%(1명)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을 전공한

사서는 문헌정보학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평생교육을 전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박사학위 취득자는 18.2%(4명)로 문헌정보학 박사가 1명, 철학박사가 1명이며 법학과 문헌정보학에서 각 1명이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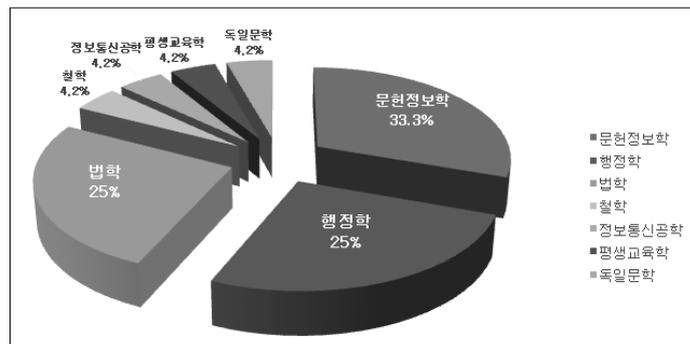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 및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평균경력 16.7년으로 1급 정사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학력에 있어서도 77.3%인 17명이나 석사학위 취득 또는 과정 중에 있으며 박사 또한 4명이 학위취득 또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사서로서의 주제전문성은 <그림 1>과 같이 문헌정보학 8명(33.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의 주제배경으로 법학과 행정학이 각각 6명(25%)으로 사회과학에 주제 배경을 둔 사서가 반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독일문학, 정보통신, 철학, 평생교육 등이 각각 1명(4.2%)으로 관련 주제를 배경으로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련 주제 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다시 학부나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등 일선의 사서들이 전문적으로써 역량을 넓혀나

가는 모습이 역력히 표출되고 있었다.

4.3 수업형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정보활용교육의 수업 형태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이 22.7%(5개원), Web DB만 외부강사와 연결해주는 대학원이 13.6%(3개원), 사서가 강의에 참여하는 대학원이 63.6%(14개원)로 나타났다.

사서가 강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는 5개(강원대, 경북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의국어대) 대학원이었다. 이들 대학원 중에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둘째 주 강의에서 도서관 현황 소개 및 이용법 안내, 셋째 주 강의에서 문헌 찾기와 비도서 자료 이용법, 일곱째 주 강의에서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현황과 차이”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사서와의 인터뷰 결과 실제로는 사서가 강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비교적 도서관학적 기반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강의 계획서가 편성되어 있어 이 연구 “4.4 정보활용



<그림 1>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의 주제전문성

〈표 3〉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정보활용교육의 수업형태 조사결과

대학	이용자교육	법률정보조사(관여시수, 내용)
강원대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외부 강사)	무
경북대	부정기	무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연 1-2회)	6주: 2주 사서강의 4주 국가별 DB - 외부강사 연결
고려대	정기	1주: 도서관이용, Web DB
동아대	부정기	5-6주: 도서관이용, Web DB
부산대	부정기	3주: 도서관이용, Web DB
서강대	부정기(1:1 이용교육)	1주: 도서관이용, Web DB
서울대	정기: 한 학기 2회(신규 DB, Westlaw 중심)	한 학기 총 5주강의 중 1주: 판례, 법령, Westlaw, 실습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주관(부정기의 외부강사)	2주: 1주 사서 30분 강의, Web DB 1주 외부강사 연결
성균관대	정기 연 3회	3주: 도서관이용, Web DB
이주대	정기 년 1회(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주: 도서관이용, Web DB
연세대	정기 연 3회	2-3주: 도서관이용, Web DB
원광대	정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정기	무
인하대	무	5-6주: 1주 도서관 이용 - 사서직강 2주 검색 - 사서직강 3-6주 Web DB - 외부강사 연결
전남대	부정기	3-4주: 1주 사서직강 2-4중 Web DB - 외부강사 연결
전북대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연 1회)	1주: Web DB - 외부강사 연결
제주대	무	1주: Westlaw만 연결
중앙대	정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정기	무
충남대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연 1회)	1주: Westlaw, Westlaw Japan
충북대	정기 2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정기, 1:1 이용교육	2주: 1주 사서강의 1주 Web DB 외부강사
한국의국어대	무	무
한양대	1주 2회 정기 프로그램 운영 (매월 홈페이지 공고)	1주: 정보원 안내, 검색실습

교육 교과목 내용”에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내용과 같이 분석이 되었으면 좋은 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교육내용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1주일에서 많게는

5~6주에 이르기까지 사서가 강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간 담당사서가 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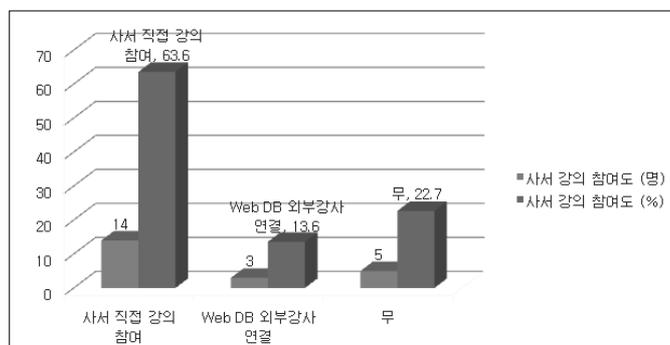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Web DB부분에 관해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려대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짧은 시간동안 사서의 직접강의로 도서관이용교육과, 외부강사의 Web D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판례, 법령, 'Westlaw' 등에 대하여 사서의 직접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보원 안내 및 검색 실습을 사서가 직접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주간의 교육을 담당사서가 담당하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충북대 등 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주는 사서가 직접강의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하였고 나머지는 Web DB의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5~6주간의 교육을 법학도서관의 사서가 담당하는 대학으로는 경희대, 동아대, 인하대 등의 3개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처음 2주간의 교육은 담당사서가 직접 강의를 통해 실시되며 다음 4주간은 Web DB에 대한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사서와 팀티칭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사서가 전담하는 2주간의 교육은 도서관이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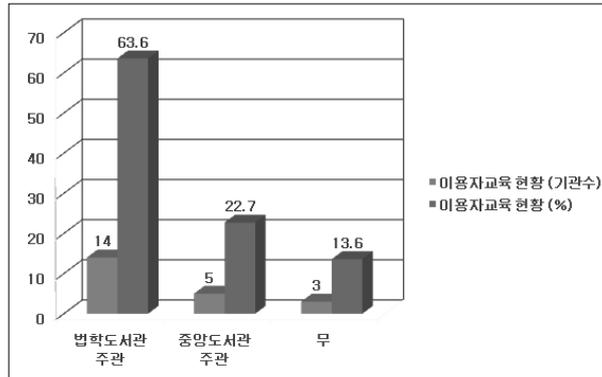
검색에 대하여 강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정보활용교육 현황에서는 사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학원이 77.3%(17개)로 대부분의 사서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강의에 관여하는 정도는 1~6주로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강의 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교육과 Web DB에 대해 외부강사와 함께 팀티칭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법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3>, <그림 3>과 같다.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3개(인하대, 제주대, 한국의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원이 5개(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나타났다. 법학도서관 주관하의 부정기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7개(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원광대, 전남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그림 2> 사서의 법정정보조사 강의 참여도



〈그림 3〉 이용자 교육 현황

운영하는 9개(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한 학기 2회로 신규 Web DB 또는 ‘Westlaw’ 중심의 DB교육과 리포트 작성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기 3번의 Web DB 이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연 2회의 ‘Westlaw’ 중심의 Web DB 이용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충북대는 정기와 부정기의 이용교육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Westlaw’ 중심의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며 1:1 이용교육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주 2회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용자교육과 법률정보조사 강의에 직·간접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들 대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기본범위주로 모든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는 관계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어들이기가 어렵고 강의시수가 짧기 때문에 체계가 미흡하므로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은 이미 이용자교육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더 깊은 질문도 잘하고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에 대한 견해를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용자교육’과 ‘법률정보조사’ 강의에 관여를 하지 않는 대학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과정으로 학부에서 이미 이러한 과정을 접하였던 학생들도 상당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므로 정보활용교육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교과목 내용

전국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조사’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사서가 강의에 직

접 관여하는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도서관이용안내, 검색(문헌, 인터넷, Web DB, 법령 및 판례) 등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한 바는 <표 4>에서와 같다.

‘도서관 이용 안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서관 견학, 도서관 소개 및 이용안내, 도서관 서비스 안내,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안내, 도서 분류에 대한 이해 및 소장 위치 안내 등으로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등 6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계획서에 소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전남대 등의 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문헌검색’에서는 자료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검색 방법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인터넷 검색’에서 국내자료는 주로 국가 전자도서관 등 정부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안내로 국립중앙도서관, KERIS, 국회도서관, 법원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문헌정보, 법제처 등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표 4>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정보조사’ 교과목 강의계획서 조사 결과

구분	강의 내용	강의대학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견학	경희, 동아, 성균관, 아주, 인하, 충북	
	도서관 소개 및 이용 안내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안내		
	도서 분류에 대한 이해 및 소장 위치 안내		
문헌검색	문헌의 유형(단행본,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 및 구체적인 소개	서강, 아주, 연세, 인하, 충북	
	문헌 검색의 방법		
인터넷 검색	국내 국가 전자도서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안내 - 국립중앙도서관, KERIS, 국회도서관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문헌정보, 법제처	동아, 아주, 인하, 전남, 충북, 한양	
	국외 - UN과 EU관련 법률정보 검색 및 국제법	연세, 인하	
Web DB	국내 LAWnB, KISS, DBPIA,	경희, 동아, 아주, 인하	
	국외	- 영미법: Westlaw	경희, 동아, 서울, 서울시립, 연세, 인하, 충북
		- 독일법: Juris Spectrum BeckOnline	경희, 동아, 서울시립, 성균관, 연세, 인하 인하
		- 프랑스법 및 기타 유럽법	성균관, 연세
		- 일본법: Westlaw Japan D1-Law	경희, 동아, 서울시립, 성균관, 연세, 인하 경희, 동아, 충북
		- 중국법: ISinolaw	경희, 동아
- 전자저널: Hein Online	경희		
법령 및 판례	- 온라인상에서의 법률정보조사 - 오프라인상에서의 법률정보조사 - 국내외 법령 및 판례 검색	경희, 동아, 부산, 서울시립, 연세, 인하	

있는 정보 이용 안내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동아대, 아주대, 인하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 자료로는 UN과 EU 관련 법률정보와 기타 국제법 등이 연세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강의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b DB는 주로 법학 관련 DB에 대한 내용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내법으로 'LAWnB'와 'KISS', 'DBPIA' 등에서 제공되는 학회지 논문에 대한 이용법이 경희대, 동아대, 아주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 법으로는 영미법 'Westlaw'가 경희대, 동아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하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 법으로는 'Juris Spectrum'이 경희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BeckOnline'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 및 기타 유럽법으로는 성균관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법으로는 'Westlaw Japan'이 경희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D1-Law'는 경희대, 동아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중국 법으로 'ISinolaw'는 경희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자저널에 대한 강의로 'Hein Online'을 다루고 있었다.

법령 및 판례는 문헌검색, 인터넷 검색, Web

DB 등에서도 강의되는 내용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학주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에 따로 한 항목을 주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법률정보조사와 국내외 법령 및 판례 검색에 대하여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방안

5.1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문 지향적 교육보다는 실무교육이 강조되는 것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성을 살리게 하고자 <표 5>(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0)와 같이 각 대학 또는 대학원의 특성 및 대학소재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독자성을 살리게 하였다.

법학도서관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에 따른 특성화된 주제의 법학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화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도서관에서는 자료에 있어서도 특성화된 분야의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분야의 정보를 축적하고 사서는 그 분야의 참고정보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주제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는 등

〈표 5〉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분야

권역	대학명	특성화분야
서울권역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고려대	GLP(국제법무)
	성균관대	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법
	이화대	생명의료법, 젠더 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서울시립대	조세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중앙대	문화법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강원대	환경
	건국대	부동산관련법
	서강대	기업법(세부특성화: 금융법)
대전권역	충남대	지적재산권
	충북대	과학기술법
광주권역	전남대	공익인권법
	전북대	동북아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제주대	국제법무
대구권역	경북대	IT법
	영남대	공익·인권
부산권역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축적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학도서관의 평가기준도 양적인 기준보다는 특성화에 따른 자료의 축적이거나 정보서비스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의 영역도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2 법학도서관 활용수업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도서관이 법학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필수 과목으로 1년간 개설하는 법학연구 및 작문과목(legal research and writing) 교과목은 작문을 중시하는 미국대학의 전통과 더불어 도서관을 통한 자료수집부터 실제로 법적 사안을 분석하여 문건을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임에도 우리나라 법학교육에는 이러한 과

목이 부재하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점이다(육소영 2004).

미국과 같이 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사서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교수들의 강의자료 지원 등 교수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수와 사서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강의자료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의 계획단계에서 담당교수는 사서와 협의하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만을 사서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짧은 시간의 강의 지원에서 교육시켜야 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와 담당사서가 강의계획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계획서를 수립하고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강의 평가에서도 같이 관여하는 밀착형 도서관활용 수업에서부터 교수가 계획한 강의계획서에서 담당사서가 보조하는 보조형 도서관활용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도서관활용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교육적 소양이 담당사서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5.3 행정지원의 유대성

대부분의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서 법학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조직상 중앙도서관의 관장 하에 있고 장소는 법학대학원에 위치하고 있어 소속 법학대학원의 행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중앙도서관의 지원도 상당히 필요한 요소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화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 분야의 법률정보에 대한 해박한 정보소양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서관활용수업과 같이 자원기반학습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핵심역할로서의 도서관의 입지가 중요하고 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책임자인 원장, 교수진, 그리고 도서관장은 “삼발이(tripod)”적 관계를 갖는 3요소라고 하겠다. 세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기울어지면 넘어지게 되며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하고 법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법률사서의 동반자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원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진이 있더라도 사서의 뒷받침이 없고 또한 도서관의 환경이 장서, 시설 등의 면에서 열악하다면 법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홍명자 2000).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조직도표상의 관계보다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전문대학원의 행정력과 교수진 그리고 양질의 도서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협의체 형태의 대학원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학도서관을 포함한 세 주체가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상호 우호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도서관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5.4 법학도서관협의회 및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

미국 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와 미국로스쿨협회(AALS: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Badertscher 1999) 외에 미국법학도서관협회(AALL: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기준의 설정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즉 1906년 창립된 이후, 법률도서관의 역할 내지 법률사서의 임무로서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왔던 AALL는 독자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의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들 전문직단체와 제휴하여 도서관 기준의 설정을 위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Cooperation between AALS and AALL)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1970년에는 독립된 위원회의 하나로서 AALL에 기준위원회(Standard Committee)를 설치하였고 1971년에는 Miami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에서 각종 도서관 기준(Library standards for various types of libraries)에 관한 공개토론회도 가졌다(홍명자 2000). 그리고 법률도서관에서 일할 사서가 구비해야 할 기본지식(일반 지식과 전문지식)을 제시한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을 1988년에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1월 21일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법학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소 및 도서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봉사, 법학사서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과 지원책에 대하여 우리 모두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및 취지와 발맞추어 21세기를 이끌어 갈 장래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학도서관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본연의 역할 수행과 함께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모색해 보았다. 현대 정보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는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법률분야의 정보활용교육은 법률로 정하여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로 지정된 정보활용교육에 해당하는 ‘법률정보조사론’의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실태들을 살펴보았다. 즉 법률정보조사 강좌의 개설 현황,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의 주제전문성 및 교육 형태, 강의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률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강좌 개설은 법으로 규정된 만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되어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학점 1-2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평균 경력이 16.7년으로 사서경력이 오래된 1급 정사서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77.3%나 되는 인원이 석사학위, 그리고 이들 중 4명이 박사학위를 과정 중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하여 주제 배경과 전문직 사서로서의 역량을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은 각 기관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주 정도 사서들이 직·간접적으로 강의에 관여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내용은 강의계획서와 교육담당사서와의 인터뷰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략 도서관이 용안내, 문헌검색, 인터넷검색, Web DB, 법령 및 판례 등 6개 분야로 구분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당수의 법학도서관 사서들이 정보활용교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의 역할과 기능의 확립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사서의 서비스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적 사명 사이에 의미 있는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도서관 내지 사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한다(Slinger 1991). 또한 사서들 역시 도서관의 역할이 법학 교육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교수와 사서간의 협력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부서와의 유대관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협회, 법학도서관협의회, 대학도서관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법학도서관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소 및 도서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봉사, 법학사서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과 지원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가토마사노부. 2004.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로스쿨 제도” 의 도입. 『비교법 연구』, 5: 50-70.
- [2] 김원주. 2005.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위한 하나의 제언. 『고시연구』, 32(2): 12-13.
- [3] 김유호. 2009.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 『고시계』, 54(9): 276-279.
- [4] 김창록, 김중철, 이국운. 2007.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과 사회』, 33: 47-65.
- [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0.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 [6]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999. 『법조인 양성제도』. 서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7] 신경철. 2008.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분석: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8] 육소영. 2004. 미국 로스쿨 제도의 조망: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14: 165-181.
- [9]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최종인가대학 정원 및 특성화 분야.” [online]. [cited 2010.8.1]. <<http://info.leet.or.kr/>>.
- [10] 홍명자. 2000.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303-332.

- [11] Badertscher, David. 1990. "Standards for law libraries and law library service." *Bookmark*, 48(Summer): 282-286.
- [12] Hotchkiss, Mary A. 1992. "The role of law librarian i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Profile*, 2(Winter): 8-12.
- [13] Slinger, Michael J. 1991.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e library staff as a meaningful and integrated part of the law school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83(4, Fall): 685-70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asanobu, Katoh. 2004.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in Japan and Korea." *Comparative Law Research(Dongguk Univ.,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Culture)*, 5: 50-70.
- [2] Kim, Won-Ju. 2005. "A proposal for Law Schools of Korea." *Exam Research*, 32(2): 12-13.
- [3] Kim, Yoo-Ho. 2009. "Law School curriculum of USA." *Gosigae*, 54(9): 276-279.
- [4] Kim, Chang-Rok, Kim, Jong-Cheol, & Lee, Kuk-Un. 2007.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 Law Schools." *Korean Law and Society*, 33: 47-65.
- [5] Law Schools Appraisal 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2010. *Law School Appraisal Standards*. Seoul: Law Schools Appraisal 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 [6]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1999.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Seoul: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 [7] Sin, Kyung-Chul. 2008.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l Condition and Development Methods of Law School in Korea, USA, and Japan*. M.A. thesis, Ajo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8] Yook, So-Young. 2004. "A concise study on U.S Law School system." *Law Collection of Treaties(Sungsil Univ., The Institute of Law)*, 14: 165-181.
- [9]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The Final T/O of Law Schools Students by the Education Department and Specialized Areas." [online]. [cited 2010.8.1]. <<http://info.leet.or.kr/>>.
- [10] Hong, Myung-Ja. 2000. "Institutionalization of academic law library for efficient leg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303-332.